

이 사 회 규 정

2022. 2. 10.

주식회사 현대백화점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3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
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
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중요
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 및 이
사를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
조언을 위해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
원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의 2 (이사의 임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.
- ②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5 조 (의 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

때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 시기,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결의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결의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상법상의 의결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승인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공동대표의 결정
- (6)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(7) 신주의 발행
- (8) 사채의 모집
- (9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0) 전환사채, 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
2.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
- (1)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안
- (2) 사업계획
- (3)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
- (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5) 그 외 회사 경영상 중대한 재무·비재무적 리스크

관련 사안

3. 기타 법령 또는 정관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된 사항

제 12 조 (긴급집행)

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제 13 조 (위 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3 조의 2 (이사회 내 위원회)

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4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, 이사회는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.
- ④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

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의 사 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17 조 (이사회 지원)

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모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한다.

제 18 조 (사외이사 지원)

-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음식물/선물, 교통비/출장비, 수당/사례비 등을 제공하며,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.

부 칙 (시 행 일)

이 규정은 1998年 4月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8. 3. 21.)

이 규정은 2008年 3月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 3. 19.)

이 규정은 2010年 3月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 2. 27.)

이 규정은 2014年 2月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11. 2.)

이 규정은 2016年 11月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8. 8.)

이 규정은 2019年 8月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3. 25.)

이 규정은 2020年 3月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 2. 10.)

이 규정은 2022年 2月 10일부터 시행한다.

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

2003년 2월 25일 개정

2008년 3월 21일 개정

이사회 규정 제 13 조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함

1. 건별 자본금 50% 미만의 차입
2. 수출입 관련 무역 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
3. 어음할인,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
4. 자본금 10%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
5.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(주식을 제외)의 매입 및 매각
6.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
7. 거래금액이 자본금 10% 미만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자금,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
8.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
9. 기타 상법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업무